

1. 개정이유

정부조직관리지침(임시조직 설치·운영 지침)에 따라 임시조직인 소방종합훈련단의 존속기간 만료 및 타법 개정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을 「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에 맞게 국가재난안전교육원으로 변경(안 제1조)
- 나. 소방종합훈련단 명칭을 삭제하고 구분을 위하여 공주캠퍼스와 천안캠퍼스로 변경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예규안

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"을 "국가재난안전교육원"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"중앙소방학교와 천안소방종합훈련단"을 "중앙소방학교 공주캠퍼스와 천안캠퍼스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중앙소방학교 2명,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2명, 충청소방학교 2명"을 "(공주)중앙소방학교 2명, 국가재난안전교육원 2명, (천안)중앙소방학교 4명"으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, <u>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</u> 및 충청소방학교 교직원 및 교육생의 급식을 위한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식당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	제1조(목적) ----- --- <u>국가재난안전교육원</u>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	
제3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<u>중앙소방학교와 천안소방종합훈련단</u> 에서 각각 운영한다.		제3조(위원회 구성) ① ----- <u>중앙소방학교 공주캠퍼스와 천안캠퍼스</u> -----.		
② (생략)		② (현행과 같음)		
③ <u>중앙소방학교의 경우 교육지원과장을, 천안소방종합훈련단의 경우 훈련단장을 각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.</u>		③ <u>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.</u>		
④ 위원은 <u>중앙소방학교 2명,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2명, 충청소방학교 2명</u> 으로 하되, 소속공무원 중 각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직원으로 한다.		④ ----- (<u>공주</u>) <u>중앙소방학교 2명, 국가재난안전교육원 2명, (천안)중앙소방학교 4명</u> ----- -----.		
⑤·⑥ (생략)		⑤·⑥ (현행과 같음)		